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지 방 연 구 직 및 지 도 직 공 무 원 의
임 용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험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연구·지도직 공채 시험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연구사·지도사의 성과평가 시 평정비율
조정범위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율성 제고

3. 주요내용

가. 연구사·지도사 성과평가 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조정비율 확대
(안 제14조, 별표4)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의 조정비율을
현재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확대

나. 연구사·지도사 공채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의 검정시험 대체(안 제22조)

연구사·지도사 공채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 주관, 2급이상)으로 대체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10퍼센트의”를 각각 “20퍼센트의”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과목은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를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4]

경력 환산율표(제19조제2항 관련)

1. 공무원경력

경력	환산율
가. <u>갑경력</u> 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3)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 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지·통합되는 직렬에서 같은 계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 4)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받은 <u>교육훈련기간, 실무수습기간</u>	100%
나. <u>을경력</u> 1) 가목3)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직무 내용이 유사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기술직군 공무원의 경력 3)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 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 직군에서 같은 계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 4)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80%
다. <u>병경력</u> 1)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제2호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 3)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60%

다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4) 같은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 상당의 경력 5) 직무 내용이 유사한 바로 아래 계급 상당의 기술직군 공무원의 경력 6) 해당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별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만 해당한다) 7) 해당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u>기존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임기제일반직공무원의 경력(계약직 공무원, 임기제일반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하며, 재임용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u> 8) 해당 계급에 상당하는 직위군 이상의 전문경력관으로 재직한 경력(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만 해당한다)	
라. 정경력 다른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 상당의 경력	30%

2. 그 밖의 경력

경력	환산율
가. 박사학위 소지경력 임용권자가 정하는 해당 계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 및 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 연구직원이 10명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
나. 자격증 소지경력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1) 같은 직류 상위 계급의 경력경쟁 임용에 필요한 경력을 초과하여 종사한 경력: 100%

	2) 같은 직류 같은 계급의 경력경쟁 임용에 필요한 경력을 초과하여 종사한 경력: 80%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근무경력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	60%

비고

1. 이 별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이 별표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직무 내용이 유사한 기술직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3. 이 별표 제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만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4. 이 별표 제2호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 기관을 포함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用に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연구사나 지도사 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근무 성적평정점 70퍼센트, 제19조에 따른 경력평정점 30퍼센트의 비 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 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근 무성적평정점을 <u>10퍼센트의</u> 범 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 고, 경력평정점은 <u>10퍼센트의</u>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 ----- ----- ----- ----- ----- ----- ----- <u>20퍼센트의</u> ----- ----- ----- <u>20퍼센트의</u>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시험과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직 및 지 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 제1차시험과목 중 영어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 에 따른 <u>영어능력검정시험</u> 으로	제22조(시험과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영어능력검정시험</u> 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5급 및 7급 <u>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7급 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 외한다)의</u> 기준점수를 적용한 다. ③ ~ ⑪ (생 략)	<u>한국사과목은 같은 영 별표 4에 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u> --- <u>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 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 사능력검정시험</u> ----- --. ③ ~ ⑪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49